

학사경고규정

2015.02.25.제정 2020.07.01.일부개정 2020.12.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3.01.02.폐지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9조의 학사경고에 관한 절차 및 발생비율의 점진적 최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경고라 함은 학칙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학기 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이후 학기의 성적관리 및 학업매진을 위해 본인 및 보호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학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기) 매 학기 말 성적공시 이후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제4조(대상) 매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5미만(4.5만점 기준)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하는 최종학기의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

제5조(수강제한) 학사경고를 받은 자(이하 “학사경고자”라 한다.)는 다음 학기의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서 2학점을 제한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사경고자 대상 특별프로그램 중 학생상담센터 또는 진로개발센터의 개인상담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자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제한을 면제한다. (개정 2020.7.1., 2020.12.1.)

제6조(절차) 학사경고 및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7.1., 2020.12.1., 2021.6.1.)

1. 매 학기 성적처리 확정 후 학사경고 명부 작성
2. 가정통신문 발송
3. 학과별 명부 통지
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지도교수 상담 실시
5. 학생상담센터 또는 진로개발센터의 개인상담 실시와 개별 모니터링(필요시)
6. 5호의 모니터링 결과 통지(학과,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팀)
7.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필요시)
8. 직후 학기 성적 향상자에 대한 포상(예산의 범위 내)

제7조(지도교수 상담 및 개인상담) ① 학사경고자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하여 성적, 학점, 향후 학습계획, 학사관리 전반, 대학생활 지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도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 내용은 별도의 상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②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실시 후 전문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내 학생상담센터 또는 진로개발센터의 개인상담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0.12.1.)

제8조(특별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사경고자 및 학습부진자, 대학생활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학습법 습득,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 향상을 위한 강연, 학사경고 예방프로그램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0.12.1.)

제9조(성적향상자 포상) 학사경고자 중 직후 학기의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제10조(세부사항) 학사경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폐지한다.